



## 법령정보

### 「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일부개정고시

-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9-156호, 2009. 9. 30 -

식품의약품안전청은 비교적 품질변화가 적은 식품인 식용유지류에 대한 권장유통기간을 제시함으로써 실험여건이 구비되지 못한 영세업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자 「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」을 일부 개정고시하였습니다.

#### □ 주요내용

가. 유통기한 설정실험을 생략할 수 있는 대상 품목 확대

- (1) 식용유지류에 대한 권장유통기간을 제시하여 유통기한 설정실험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.(콩기름, 옥수수기름, 참기름, 들기름, 홍화유, 팜유류,

올리브유, 야자유, 혼합식용유, 가공유지, 쇼트닝, 마가린류 및 기타 등)

※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([www.kfda.go.kr](http://www.kfda.go.kr))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